

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

의안 번호	二
----------	---

2003. 9. 23

1. 제안사유

- 시민에게 의회의 위상을 확고하게 하여 이미지를 제고하고
- 대외적인 경쟁력을 높혀 자아발전의 계기 마련

2. 주요골자

- 의회는 의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(안제7조제4항)
-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(안제7조제5항)

3. 검토의견

-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에 근간을 두고 시민의 대표자로서
- 의원 자신에 대하여 행동과 생각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자아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긍정적인 면과 의원에 대하여 또 다른 옥죄임을 줄 수 있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으나
- “주어지는 것이 아니라” “만들어 가는것”이 시민들이 바라보는 이상형의 지방의회 의원상이라는 면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.

성남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

검 토 보 고

의 안	二
번 호	

2003. 9. 23

1. 제안사유

-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
-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규칙 마련

2. 주요골자

-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을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함(안 제2조)
- 위원의 임기는 성남시의회의원회조례 제7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함(안 제3조)
- 위원회 기능은 성남시의회의원윤리강령 및 성남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안이 회부되었을 때 이를 심사 보고하는 것으로 함(안 제4조)
- 윤리심사 요구와 방법, 윤리심사안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윤리심사 요구기한, 윤리심사 회부 시한, 윤리심사안 심사기일 등을 규정함(안 제6조)
- 위원회는 효율적인 윤리 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

- 윤리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(안 제9조)
-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)
-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은 위원회에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, 심사대상 의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변명할 수 있게 함(안 제11조)
- 위원은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사에 참여할 있도록 함.(안 제13조)
- 윤리심사 결과의 본회의 보고사항과 위원회가 윤리심사 결과를 심사대상 의원에게 통보하는 사항을 규정함(안 제14조)

3. 검토의견

-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7조 규정에 의해 세부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사항으로
- 본규칙 제5조(윤리심사 요구와 회부)제2항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권한과
- 본규칙 제5조 제3항의 의원이 심사대상 의원에 대한 기준은 다소 논쟁에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나
- 이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2.3항에 기초를 둔 무리없는 조항으로 사료됩니다.

성남시의회 의원윤리실천규칙안 검토보고

의안 번호	二 三
----------	--------

2003. 9. 23

1. 제안사유

- 성남시의회의원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규정을 제정하고 실천함으로써
-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심사 기준을 정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품위 유지와 청렴 의무를 정함
(안 제2조 및 제3조)
- 의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직무관련 취득 행위 등을 금지함(안 제4조 및 제5조)
- 의정활동을 통하여 알게된 기밀의 누설을 금지함(안 제6조)
- 의원의 의회 회의출석 의무를 강화함(안 제11조)

3. 검토의견

- 의원님들 자신을 엄격하게 다스리는 매우 바람직한 규칙 제정으로 사료되나
- 제5조(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)“공여”를 “제공”으로 하며
- 제11조(회의출석)제2항은 너무나 상식적인 규정으로 “삭제”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